#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30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강대식 · 조지연 · 유용원

고동진 · 강선영 · 이인선

주호영 · 배준영 · 구자근

정점식 · 김상훈 · 강명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 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 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 법률 제 호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등) ① 출국 전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한 자(제12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금징수자"라 한다)에게 납부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환급의 소멸시효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납부금징수자는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환급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해당 출국납부금 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 청구의 통지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태료) ① 납부금징수자가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국납

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납부금 환급청구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징수하는 출국납부금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1조의2(출국납부금의 환급청
	<u>구 등) ① 출국 전 제2조제3항</u>
	에 따른 출국납부금을 납부하
	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은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한
	자(제12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금징수자"라 한다)에게 납
	부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환
	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환급의 소멸시효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납부금징수자는 제2항에 따
	른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환
	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
	<u>다.</u>
	④ 제2항에 따른 환급의 소멸
	시효가 도과한 경우 해당 출국
	납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 청구의 통지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조(과대료) ① 납부금징수자 가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